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생성형 AI 기술 이용 저작물에 대한 표시의무 부과 >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507호)

2025. 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생성형 AI 기술 이용 저작물에 대한 표시의무 부과 (안 제7조의2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전용기의원 등 17인

나. 발 의 일: 2024. 11. 13.

다. 회 부 일: 2024. 11.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AI를 창작에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AI를 이용한 생성물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 여부, 저작권 귀속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권리자와 사용자의 법적 책임 등이 불분명한 상황임.

특히, AI를 이용한 생성물이 인간의 창작물과 구분되지 않을 경우, 창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되거나 소비자가 AI를 이용해 만든 콘텐츠를 인간이 제작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저작물이 AI를 이용하여 제작된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제7조의2 제1항)하고, 그 표시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함.

Ⅲ. 검토의견

1. 생성형 AI 기술 이용 저작물에 대한 표시의무 부과 (안 제7조의2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 대하여 해당 저작물이 AI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7조의2(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저작물의 표시) ① 생성형 인공지능(글·소리·그림·영상 등의 결과물을 다양한 자율성의 수준에서 생성하도록 만들어진 인공지능을 말한다)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해당 저작물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 내용 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다. 검토사항

- 최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의 발달과 ‘생성형 AI’¹⁾ 등의 등장에 따라 각종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는 영역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면서, AI 기술을 통해 생성되는 콘텐츠 또한 인간의 창작물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 이는 콘텐츠 산업의 외연 확장 및 산업 고도화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deep fake)’ 기술 등을 이용하여 생성된 딥페이크 성범죄물, 사기, 가짜뉴스 또는 허위 조작정보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허위 사실에 따른 피해를 보거나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²⁾
- 또한, 저작권 분야와 관련해서도 AI 기술을 통해 생성된 콘텐츠가

1)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방대한 데이터 학습을 바탕으로 소설·시·이미지·비디오·코딩 등의 콘텐츠를 스스로 생성해 내는 기술로, 향후 각종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정 분야에서는 이미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2) YTN, “'딥페이크 음란물, 최근 3년 4배 폭증'...SNS '프사'를 노린다”, 2024. 6. 12., 조선일보, “딥페이크의 공습...전쟁 여론·대선구도까지 바꾼다”, 2024. 6. 16. 등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이 경우 그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그에 따라 AI 기술을 통해 생성된 콘텐츠에 대하여 AI 기술 이용 사실을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해당 콘텐츠가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용자 등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³⁾
- 이에 개정안은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하여금 ‘해당 저작물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콘텐츠 등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인공지능 콘텐츠의 신뢰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저작권의 영역에 있어서도 AI 기술을 통해 생성된 콘텐츠가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아울러, 미국의 경우 백악관의 주도로 2023년 7월 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AI 관련 기업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콘텐츠에 워터마크(watermark)⁴⁾를 삽입하는

3) 국회입법조사처, “딥페이크 식별을 위한 AI 생성물 표시 의무 입법 방안”, 2024. 10. 18. 등

4) 특정 정보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이미지·오디오·비디오 파일 등에 삽입된 패턴 등을 의미함.

등 자발적 안전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미국 정부는 인공지능 행정명령을 통해 합성 콘텐츠의 진위와 출처를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제3조), 유럽의 경우 EU가 2024년 3월 이른바 ‘인공지능법(AI Act)’을 제정하여 AI 시스템 제공자가 딥페이크와 같이 실제 콘텐츠와 유사한 이미지·오디오·비디오 콘텐츠 등을 생성 또는 조작할 경우 해당 콘텐츠가 AI로 만든 생성물임을 공개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규제⁵⁾ 등을 신설하였다는 점도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이와 관련한 국내 입법례로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8⁶⁾이 있으며, 최근 제정되어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는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포함되었음.⁷⁾

5) EU, 「Artificial Act」, Article 52(3)

6)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 다만, AI 기술 이용 콘텐츠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저작권법」의 제1절(제4조부터 제7조)은 저작물에 관한 규정⁷⁾이므로 이 제1절에 이 조문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는 ‘AI 산출물’에 대하여 ‘저작물’로서의 법적 지위 및 그에 따른 저작권 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⁸⁾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자’의 권리 등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⁹⁾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제1절에 ‘저작물’이 아닌 ‘AI 산출물’ 등에 대한 표시의무를 규정하는 것보다는 AI 산출물이라는 점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이를 ‘제10장 보칙’ 등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025. 1. 제정, 2026. 1. 시행 예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 제2항에 따른 표시, 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의 방법 및 그 예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2023. 12. 27.

9) 「저작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AI 이용 콘텐츠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하되 이를 「콘텐츠산업 진흥법」¹⁰⁾에 신설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048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바, 개정안 심사 시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아울러, 최근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함)을 통해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표시의무가 부과될 예정인데,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기본법 제2조제8호¹¹⁾의 이용자의 표시의무에 대한 규정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기본법에 따른 인공지능사업자의 표시의무와 개정안에 따른 이용자의 표시의무 간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¹²⁾ 또한, 이 표시의무에 따른 표시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규제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정안에 따라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10)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025. 1. 제정, 2026. 1. 시행 예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이용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12) 참고로, 방송통신위원회도 법률 간 체계 정합성 확보 및 중복규제 예방을 위하여 위 기본법 및 다수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과 함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한국방송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는 각각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먼저, 개정안은 표시의 내용과 방법을 전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표시의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예측이 다소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AI 기술 및 표시의 내용·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이를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이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및 향후의 AI 기술 활용 수준·방법 및 그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관찰·분석과 규제 범위·방법·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임.

- 이 같은 위임 규정에 있어 기본법에서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게 하고, 표시의 방법 및 그 예외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기본법 제31조제3항·제4항¹³⁾).

○ 아울러, 개정안은 인공지능 이용 콘텐츠에 대한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 수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표시의무 부과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등 제재수단에 대한 추가적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는 문화체육관광부도 같은 의견임.

1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025. 1. 제정, 2026. 1. 시행 예정)」 제 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③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 제2항에 따른 표시, 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의 방법 및 그 예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하여 기본법은 생성형 인공지능 제품·서비스가 인공지능 기반 운용 사실을 사전고지하지 않은 경우나 그 밖에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의무 등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등에 사실조사, 시정명령을 규정하고(기본법 제40조14), 시정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기본법 제43조15)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본법 제2조제5호¹⁶⁾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있는 만큼 안 제7조의2제1항 중 ‘생성형 인공지능’의 경우 이 규정을 인용할 필요가 있음.

1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025. 1. 제정, 2026. 1. 시행 예정)」 제 40조(사실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31조제2항 및 제3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1항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제31조제2항 및 제3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1항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이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공지능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025. 1. 제정, 2026. 1. 시행 예정)」 제 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1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025. 1. 제정, 2026. 1. 시행 예정)」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 그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과 같이 표시의무의 대상을 ‘저작물’로 규정할 경우 창작성 여부 판단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표시의무의 부과 대상이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산출물’로 규정하고, 해당 산출물의 저작물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고,

규정의 위치를 개정안과 같이 ‘제2장 저작권’의 ‘제1절 저작물’ 내로 하기보다는 ‘제10장 보칙’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표시의무가 부과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개정안에 따른 의무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76